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83

발의연월일: 2020. 11. 3.

발 의 자: 박광온·김영배·오영훈

민병덕 · 김승원 · 고영인

이장섭 · 임호선 · 정필모

이탄희 · 최인호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어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및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이나 유해한 콘텐츠의 증가 등 미디어 이용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올바르게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0조의3제1항 중 "제23조제2항·제3항"을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생	제23조(교육과정 등)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
	우 미디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u>정보의 올바른 이해·분석 및</u>
	비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u>야 한다.</u>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	
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	
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	
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	
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u>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u>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	
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